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공2006.10.1.(259),1671]

판 시 사 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 조 조 문

민법 제999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3가합9127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1984,52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1988,18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1992,103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88, 16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1993하, 2098)

따름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정◎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은행 (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정영래가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